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227호 2016. 12. 23(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949,500원”에서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07,98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에 따라”로, “관리 운용하는데”를 “관리·운용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중전의 제2조의1)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기예금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판로개척등"을 "판로개척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의1,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로 한다.

제5조의2(중전의 제5조의1)제1항 중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망, 질병 기타"를 "질병 및 그 밖의"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4(중전의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3)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매년도초”를 “매년도 초”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내외”를 “3퍼센트 내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환방법 등”을 “상환방법 등”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6항의”로, “일반시중은행”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환기간전이라”를 “상환기간 전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 이외”를 “목적 이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으로”를 “기업지원과장으로”로, “업무처리 주 무담당”을 “기금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 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제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매 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구 의회”를 “서구의 회”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1. 업체개요

○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대표자 주요경력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생산품의 개요

제 품 명	특 성 및 용 도

2.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 융자금의 사용목적 :

○ 융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 금액 합계는 신청 금액과 동일)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원부자재구입			
판매관리비			
세금과공과			
운 반 비			
기 타			
계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청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 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복지증진 사업
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
2. 평등부부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7.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2. 관리주체
3. 관리사무소장
4.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 등

제3조(감사의 요청 등)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기간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 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정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의결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의 결 통 지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00: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 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으로, “지원함으로서”를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및”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9항에”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 중 “시설물의 보수”를 “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를 “소규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을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를 “보조금지원은 준공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검사일”을 “준공일”로, “의거”를 “따라”로, “구 예산중”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중”으로, “매회계년”을 “매 회계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혜대상 사업에 대하여는”을 “수혜대상은”으로, “동종”을 “같은 종류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토목·조경 주택관리”를 “건축·토목·조경·주택관리”로,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자”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